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종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4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5.

발 의 자 : 김종민 · 허성무 · 정일영
손 솔 · 전종덕 · 한창민
김승원 · 윤종오 · 황 희
문대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감면, 금융지원, 보증·보험지원, 입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.

그런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야 하고, 국내에 생산시설 외 연구개발시설을 갖추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 등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에 그 기준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. 또 무역·산업 전략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국내복귀 및 생산을 고려하더라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유연한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실제 법령 시행 이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의 수가 줄어들고, 신청 이후 국내복귀 계획을 철회하는 기업은 증가하고 있음. 또

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투자 이행률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해외사업장의 2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완화하고,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. 또한 그 외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 필요한 조문을 정비함(안 제2조 및 제5조).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나목 중 “2년”을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장소”를 “장소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호나목의 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시설을 갖추고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다만, 천재지변, 전쟁, 「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망 위험 및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급망 위기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제1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 “사업장”이란 제1호나목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.

3. 4. (생략)

제5조(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6호에 따른 공급망 위협 및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급망 위기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-----

-----장소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호나목의 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시설을 갖추고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장소를 포함한다)-----.

3. 4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-----

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-----

-----.

② ~ ⑤ (생략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